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이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5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방법, 요구 및 제공 절차, 본인정보 종류의 협의·공표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원인이 정기적으로 본인정보 제공요구(철회권 행사 가능)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원처리기관의 명칭
2. 제공 요구를 통해 처리하려는 민원(이하 “요구민원”이라 한다)의 명칭
3. 제공 요구 대상 본인정보의 명칭
4. 본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5.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와 종

료시점

6. 그 밖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그 요구서를 지체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제공 요구서를 전달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기관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 등으로 인해 제공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공을 정지·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처리기관을 통하여 민원인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제공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처리기관을 통하여 민원인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은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암호화, 전산시스템 접근통제, 접속기록관리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안대책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은 민원처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보안대책에 관한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민원

처리기관의 장에게 점검항목·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법 제10조의2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말한다.

⑨ 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종류 및 그 세부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제공 요구 대상 본인정보를 정하기 위해 해당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의 신원에 관한 본인정보
2.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3.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의 자격의 증명에 관한 본인정보
4. 물건에 대한 권리의 확인 또는 법률상의 권리의 내용에 관한 본인정보
5. 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소재(所在)·형상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6. 개인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7. 그 밖에 행정기관등이 민원처리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본인정보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본인정보의 목록을 정하여 고시한다.

⑪ 민원처리기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원처리기관의 명칭 2. 제공 요구를 통해 처리하려는 민원(이하 “요구민원”이라 한다)의 명칭 3. 제공 요구 대상 본인정보의

명칭

4. 본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5.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와 종료시점

6. 그 밖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그 요구서를 지체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제공 요구서를 전달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기관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 등으로 인해 제공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공을 정지·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처리기관을 통하여 민원인 본인에

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제공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처리기관을 통하여 민원인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은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암호화, 전산시스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리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안대책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은 민원처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보안대책에 관한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점검항목·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법 제10조의2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말한다.

⑨ 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종류 및 그 세부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제공 요구 대상 본인정보를 정하기 위해 해당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의 신원에 관한 본인정보
2.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3.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의 자격의 증명에 관한 본인정보
4. 물건에 대한 권리의 확인 또

는 법률상의 권리의 내용에 관한 본인정보

5. 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소재(所在)·형상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6. 개인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7. 그 밖에 행정기관등이 민원처리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본인정보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본인정보의 목록을 정하여 고시한다.

⑪ 민원처리기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연 락 처	(044) 205 - 2466